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2006년 5월 10일

제06-13호

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도출 실패와 향후 전망

서진교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연구위원 (jksuh@kiep.go.kr, Tel; 3460-1156)

주요 내용

- DDA 농업협상은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06년 4월 말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감축의 세부원칙(modality) 합의·도출 시한을 지키지 못한 채 5월 초부터 6주간 연속협상에 들어감.
- 4월 말 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한 주요 원인은 '삼각쟁점(triangle issues)'에 대한 미국과 유럽연합(EU), G20(수출개도국그룹)의 입장 절충 실패라고 판단됨.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하여 미국은 EU와 G20의 추가 감축 및 품목별 감축요구로 수세에 몰려 있으며, 추가감축의 여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EU는 미국과 G20의 대폭적 감축요구로 압박받고 있으나, 공산품분야에서 G20 등 개도국들이 상당한 관세감축을 우선 약속해야 농업분야에서 추가감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버티고 있음.
 -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하여 G20는 개도국 우대조치를 내세워 반발하고 있으며, EU가 먼저 농산물 관세의 추가감축을 약속해야 한다고 응수하고 있음.
- 세부원칙 합의·도출 시한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6주간의 연속협상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그때까지의 협상결과에 기초하여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 또는 라미 사무총장에 의해 세부원칙 초안이 문서로 제시되고, 이를 기초로 7월 중순 이후 세부원칙 도출을 위한 정치적 입장 절충이 시도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무역촉진법안(TPA) 시한과 2006년 하반기 주요국의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지 않는다면, DDA는 앞으로 상당 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1. DDA 농업협상 최근 추이

- DDA 농업협상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2006년 4월 말까지 농업보조금 및 농산물 관세 감축의 세부원칙이라고 할 모델리티(modality)의 합의·도출에 실패하였으나, 앞으로 가능한 이른 시간 안에 세부원칙을 도출하고자 5월 초부터 6주간에 걸친 연속협상에 들어감.
- 지난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주요 쟁점의 하나인 농산물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이 2013년으로 확정되고, 2006년 4월까지 세부원칙 도출, 7월까지 국가별 이행계획서(Country Schedule: CS) 작성 제출 등 2006년 DDA 협상일정이 합의됨에 따라 DDA 농업협상은 당초 빠른 진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었음.
- 실제로 DDA 농업협상은 예년과 달리 2006년 1월부터 4월까지 매일 개최되었으며, 아울러 DDA 농업협상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주요 6개국(G6)¹⁾도 핵심 쟁점에 대해 서로의 이해를 절충하고자 협상기간을 포함하여 지난 4개월 동안 매일 한 차례 이상 고위 실무급 또는 각료급 회동을 가졌음.

글상자 1. 2006년 1~4월 DDA 농업협상 일정

| | |
|-------------|---------------------------------------|
| 1월 23~27일 | 1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
| 1월 27~28일 | 소규모 각료회의 (스위스, 다보스) |
| 2월 9일 | 팔코너 의장 질의서 배포 |
| 2월 13~17일 | 2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
| 2월 21~22일 | 미국·EU 통상장관 회담 (미국, 워싱턴) |
| 2월 27~3월 1일 |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프랑스, 파리) |
| 3월 7~8일 |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스위스, 제네바) |
| 3월 10~12일 | G6 각료회의 (영국, 런던) |
| 3월 20~24일 | 3월 농업협상 (스위스, 제네바) |
| 3월 27~28일 | G12 실무 고위급회담 (스위스, 제네바) |
| 3월 31~4월 1일 | 3자(미국, EU, 브라질) 통상장관회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
| 4월 6일 | G6 실무 고위급회담(SOM) (프랑스, 파리) |
| 4월 18~21일 | 4월 농업협상 |
| 4월 21일 | 그린룸(Green Room)회의 (스위스, 제네바) |

1) 주요 4개국(G4)인 미국, EU, 브라질, 인도에 호주와 일본이 추가되어 주요 6개국(G6)이 됨. 주요 12개국(G12)은 주요 6개국에 캐나다, 말레이시아, 이집트, 노르웨이, 케냐, 중국이 추가됨.

- 그러나 핵심 쟁점에 관해서는 주요국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타협점 마련이 매우 미진하였으며, 이는 결국 4월 말 세부원칙 도출 실패로 귀결되었음.
- 이에 팔코너(Falconer) 농업협상그룹의장은 현재의 협상 추진력을 유지하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세부원칙을 합의·도출하고자, 세부원칙 도출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5월 초부터 2주 단위로 연속해서 3번의 농업협상을 계속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협상 참가국들은 이에 동의하였음.

2. 세부원칙 합의·도출의 관건: ‘삼각쟁점’에 대한 타협

- DDA 농업협상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쟁점은 소위 ‘삼각쟁점(triangle issues)’으로 불리는 농업과 비농업에서의 관세감축 폭과 농업보조금의 감축 폭임.
 - 그동안 핵심 쟁점의 하나였던 농산물 수출보조금의 철폐시한 설정 문제가 2005년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2013년으로 합의된 후, DDA의 세부원칙 합의·도출을 위한 남은 핵심 쟁점은 농업분야에서의 보조금 및 관세감축 폭과 비농산물시장접근(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분야에서 개도국의 관세감축 폭 등 세 가지로 좁혀졌음.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감축대상보조(AMS)의 감축 폭과 이번 DDA에서 새롭게 도입된 블루박스(Blue Box)보조에 대한 추가규제의 내용이 핵심 쟁점임.
 - 농산물 관세감축 폭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감축 폭이지만 이 문제는 관세감축의 혜택을 보는 민감품목(sensitive products)의 수 및 그 대우(treatment)와 서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주요국간 입장 절충이 가장 어려운 쟁점의 하나임.
 - 민감품목에 적용될 관세감축률은 일반품목에 적용될 관세감축률의 약 50% 수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품목에 적용될 관세감축 폭을 크게 한다고 해도 민감품목의 수가 대폭 확대되면 관세감축의 실질적 효과는 크게 떨어짐.
 - 특히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가 결정되면 개도국에만 특별히 허용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의 수와 대우도 그에 준해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는 관세감축 폭과 서로 맞물려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한 핵심 쟁점임.
 - 마지막으로 비농산물시장접근분야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스위스공식을 적용해서 관세를 감축한다는 데는 큰 이의가 없으나, 개도국에 적용될 계수(실질적으로 관세상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의 크기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

- 이러한 삼각쟁점은 공교롭게도 DDA 농업협상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미국과 EU, G20²⁾ 3대 세력의 핵심 이해와 결부되어 있으며, 특히 각 세력간에 쟁점별로 공세적 입장과 수세적 입장이 서로 얽혀 있어, DDA 전체의 합의·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EU와 G20가 연합하여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반면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G20가 같은 편에서 EU를 공격하고 있음. 한편 비농산물의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EU가 연대하여 개도국을 대표하는 G20를 압박하고 있음.

가. 농업보조금 감축과 미국의 고민

- 농업보조금 감축과 관련해서는 EU와 G20가 합세하여 미국을 압박하고(미국이 제시한 수준보다 더 큰 폭의 감축률을 제시)있음.
- 미국은 감축대상보조(AMS)의 60% 감축, 블루박스의 상한도 지난 2004년 7월 기본골격(framework) 수준(농업생산액의 5.0%)보다 낮은 농업생산액의 2.5%로 설정, 최소허용보조(*de minimis*)의 기준은 기존 농업생산액의 5.0%에서 2.5%로 낮추자는 입장임.
- 그러나 EU와 G20는 미국에 감축대상보조의 70% 감축, 새로운 블루박스보조에 대해서는 총량규제뿐만 아니라 품목특정 규제를 추가하고, 최소허용보조의 기준도 농업생산액의 1.0%로 낮추어 80% 이상 감축을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은 농산물 관세감축에서의 획기적인 입장 제시와는 달리 국내보조, 특히 농업보조 감축에서는 EU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여유가 없는 실정임.
- 미국이 EU나 G20가 요구한 대로 감축대상보조를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i) 지난 2002년 농업법(2002 Farm Bill)에서 새로이 도입한 '가격변동대응 보조정책(counter-cyclical payments: CCP)' 이 새로운 블루박스에 순조롭게 포함될 수 있는지와 ii) 품목특정 AMS의 기준연도 설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됨.
 - EU의 AMS 실제 지급수준은 허용한도의 59% 수준이며, 일본은 18% 수준이어서 이미 AMS를 41%, 82% 감축한 상태임.
 - 따라서 AMS 감축을 허용한도대비 70% 감축한다고 해도, 일본은 사실상 추가감축하지 않아도 되며, EU는 30% 정도 추가감축이 필요한데, 2013년까지의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으로 AMS의 추가감축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 지난 2003년 멕시코 각료회의 개최 직전에 브라질과 인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산물 수출개도국그룹으로 주로 선진국의 농업보조와 관세의 철폐 내지 대폭 감소를 주장하고 있음.

- 반면 미국은 2001년 기준으로 AMS를 25% 감축한 상태이지만, 2002년 이후 농업보조금 지급이 크게 늘어나 추가적으로 45% 이상 감축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 1. 미국, EU, 일본의 감축대상보조(AMS) 지급 수준

| | 미국(2001년) | EU(2001년) | 일본(2002년) |
|--------------|-----------|-----------|-------------|
| AMS 지급 한도(A) | 191억 달러 | 672억 유로 | 3조 9,729억 엔 |
| AMS 실제 지급(B) | 144억 달러 | 393억 유로 | 7,300억 엔 |
| (B/A)×100(%) | 75.4 | 58.5 | 18.4 |

자료: WTO 사무국 문서

- 미국이 AMS의 추가감축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AMS에 포함된 CCP 지급을 새로운 블루박스보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데, G20나 EU가 주장하는 것처럼 새로운 블루박스에 품목특정 규제를 추가할 경우 미국의 이러한 계획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미국의 2002~04년 CCP 지급총액은 약 36억 달러(연평균 12억 달러)로 농업총생산액의 2.5%인 42억 달러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새롭게 블루박스로 전환할 경우 총량규제(농업생산액의 2.5% 한도)가 있어도 사실상 감축 부담이 없음.
- 그러나 CCP의 품목별 지급액을 보면 쌀, 면화, 땅콩에 대한 CCP 지급이 해당 품목 생산액의 10%를 초과하고 있어, 새로운 블루박스에 품목별 규제가 추가될 경우 미국으로서는 이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은 형편임.

표 2. 미국의 CCP 지급 수준(2002~04년 평균)

(단위: 억 달러, %)

| | 밀 | 옥수수 | 수수 | 쌀 | 면화 | 땅콩 |
|--------------|-------|-----|------|-------------|-------------|-------------|
| 생산액(A) | 69.2 | 228 | 8.86 | 14.3 | 48.6 | 7.44 |
| CCP 지급액(B) | 0.009 | 1.9 | 0.08 | 1.66 | 6.92 | 1.16 |
| (B/A)×100(%) | 0.1 | 0.8 | 0.9 | 11.6 | 14.2 | 15.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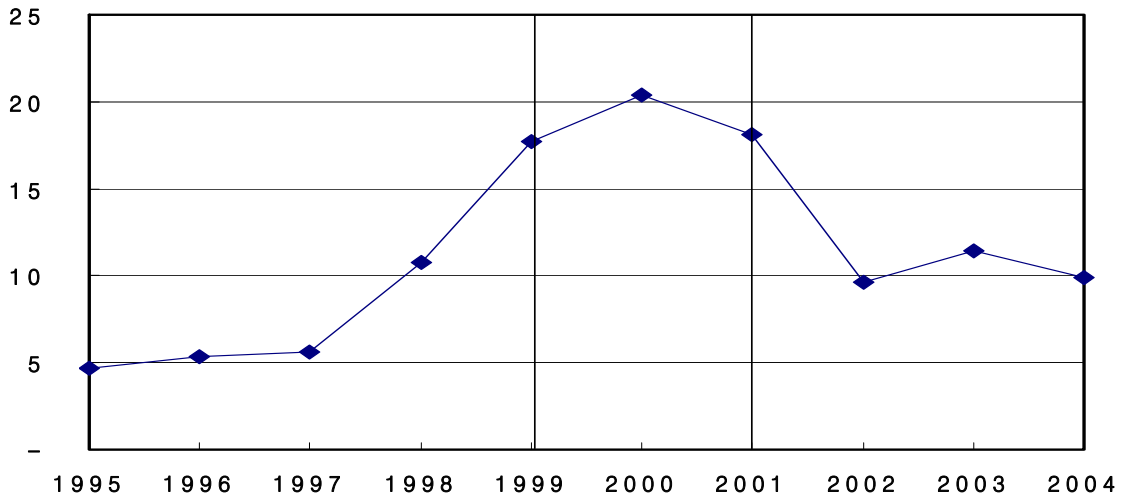
자료: CCP 지급수준은 www.ewg.com, 품목별 생산액 자료는 www.nass.usda.gov.

- 최소허용보조를 이용하여 AMS 추가감축을 이행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나, 미국의 최소허용보조 수준은 EU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동시에 기준이 1%로 인하될 경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미국의 2001년 품목불특정 최소허용보조는 농업총생산액의 3.6%인 반면 EU는 0.6%, 일본은 1.0%에 불과.

- 한편 미국의 1995~2004년 품목보조총액은 1,136억 달러(연평균 약 114억 달러)로, 기준 연도를 1999~2001년으로 설정하여 평균보조총액을 구하는 경우와 1999~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올림픽 평균을 구하는 경우 약 2배의 차이가 발생.
- o 1999~2001 3개년 평균보조액은 187억 달러로 1995~2000년을 기준으로 하여 최소값과 최대값을 제외한 평균보조액, 99억 달러의 1.9배에 이룸.
- o 이에 따라 미국은 품목별 보조상한을 설정할 때 계산에 이용되는 기준연도로 1999~2001 3개년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1999~2000년 올림픽 평균방식을 지지하고 있어 미국이 수세에 몰리고 있음.

그림 1. 미국의 품목보조 지급 수준(1995~2004년)

(단위: 십억 달러)



주: 품목보조에 감축대상보조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님.

자료: www.ewg.com

- 아울러 농업보조 추가감축에 대한 미국 의회의 반발도 미국이 처한 어려운 상황임.
- o 미국 의회는 현재 2007년 농업법을 새롭게 입안하고 있는데, DDA 농업협상 결과가 확정되어 새로운 농업법 입안과정에 외부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
- 미국 행정부는 점차 누증되는 재정적자의 압박을 줄이고, 동시에 소비자 후생증진을 위하여 새로운 농업법 제정 및 DDA 결과를 활용해 농업보조금 감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농업보조금 감축에 대한 의회 및 농업계 이익단체의 비판과 반발을 대폭적인 관세감축을 통한 농산물 수출확대 가능성으로 상쇄시키고자 하고 있다고 판단됨.
- o 미국이 시장접근분야에서 EU가 받아들이기 힘든 획기적인 관세감축을 제안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는 동시에 향후 미국의 타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나. 농산물 관세의 대폭 감축이 어려운 EU

-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G20가 합세하여 EU를 압박하고 있음.
 - EU는 최상위 관세구간에 적용될 감축률로 60%, 그리고 민감품목 수로 전체 세번 수의 최대 8%,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1/3~2/3 수준,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현행 수입량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이에 대해 미국은 최상위 관세구간에 평균 90%(G20는 75%)의 감축률을, 민감품목 수로 전체 세번 수의 1%, 민감품목의 관세감축률은 일반 감축률의 1/2(G20는 70% 이상) 수준, 민감품목의 TRQ 증량은 국내소비량을 기준으로 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EU는 공동농업정책(CAP)의 개혁으로 농업보조금(수출보조금 포함) 감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농산물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수입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쉽지 않은 실정임.
 - EU 역내의 핵심 농산물인 낙농품과 밀, 축산물, 설탕, 포도주 등은 상대적으로 고관세품목일 뿐만 아니라 미국, G20(특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호주의 핵심 수출농산물과 겹치기 때문에 EU가 해당 품목의 수입관세를 대폭 감축하기는 어려운 처지임.

표 3. 주요 수출 농산물의 EU의 양허관세수준

(단위: %)

| 품목 (HS) | 주요 수출국 | EU의 양허관세율 |
|-----------------|--------------------|-----------|
| 쇠고기(0201, 0202) | 미국,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나 | 77~142 |
| 돼지고기(0203) | 미국, 브라질 | 0~66 |
| 닭고기(020710) | 미국, 브라질, 중국, 태국 | 6~65 |
| 양고기(0204) | 호주, 뉴질랜드 | 38~105 |
| 탈지분유(040210) | 호주, 뉴질랜드 | 57~80 |
| 전지분유(040220) | 호주, 아르헨티나 | 45~87 |
| 버터(040510) | 뉴질랜드 | 83~135 |
| 치즈(040610) | 뉴질랜드 | 0~100 |
| 밀(100110) |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 인도 | 81.9 |
| 옥수수(1005) |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중국 | 0~73 |
| 쌀(1006) | 태국, 중국, 인도 | 7~94 |
| 설탕(1701) | 호주, 태국, 인도, 브라질 | 115 |
| 포도주(2204) | 미국, 호주, 칠레 | 0~137 |

자료: 서진교 외, 『2005 DDA 농업협상 전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특히 공동농업정책의 구조상 특정 품목의 보호수준은 관세와 농업보조금 및 수출보조금의 합으로 결정되는데, 수출보조금은 이미 철폐하기로 약속했으며, 농업보조금도 대폭 감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마저 대폭 감축된다면 이는 공동농업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EU 입장에서 수입관세의 대폭 감축이 매우 어려운 실정임.
- EU는 관세감축률이 대폭 커질 경우를 대비하여 역내 핵심 농축산물을 관세감축의 혜택이 허용된 민감품목으로 돌려 적정수준의 국경보호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접근분야의 핵심 쟁점은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G20는 민감품목 수로 전체 세번 수의 1%를 제시하여 8%를 제시한 EU를 계속 압박하고 있음.
- 미국과 G20는 민감품목 수가 확대될 경우, 해당 품목에는 실질적인 시장접근 개선(DDA 출범시 각료합의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EU를 공격함.
- 이에 대해 EU는 미국의 90% 관세감축 요구는 현실을 무시한 실현 불가능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으며, G20에 대해서는 시장접근의 실질적 개선이라는 목표는 일반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며, 개도국들이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하하고, 서비스교역에서도 보다 자유화된 제안을 제시할 경우에 한해, EU도 농업분야에서 좀더 진전된 제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임.

다. 개도국 공산품 관세의 실질적 감축과 G20의 반발

- 공산품 관세감축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EU가 힘을 합쳐 개도국, 특히 G20를 향해 공산품 관세의 실질적 감축을 요구하고 있으며, G20는 이에 반발하고 있음.
- 비농산물 관세감축방식과 관련해서는 스위스공식에 의한 감축에 큰 이의가 없는 실정임. 그러나 개도국에 적용될 스위스공식³⁾의 계수 크기를 놓고 EU, 미국 등 선진국은 최소한 15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브라질과 인도 등 G20의 핵심 국가들은 30 이하는 곤란하다는 입장임.
-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은 개도국 공산품의 양허관세와 실행관세 사이의 차가 크기 때문에 적어도 계수 15의 스위스공식에 의한 감축이 이루어져야 실행관세가 감축되어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이 일어난다고 지적하면서, 개도국을 압박하고 있음(특히 EU는 농업분야에서의 G20 공세를 최대한 약화시키기 위하여 비농산물 시장접근분야에서 계수 15의 스위스공식을 강력히 주장함).

3) 스위스공식은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관세감축방식의 하나로서, 적용되는 계수가 사실상 관세상한의 역할을 하고 있음. 예를 들어 계수 15의 스위스공식이 적용되면 모든 해당 품목의 관세는 최종적으로 15% 미만으로 낮아지게 됨.

- 그러나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경제개발과 개도국 우대를 내세우며, 스위스 공식을 적용하되 계수 30미만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음. 특히 브라질은 개도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지적하며, DDA의 취지에 맞게 EU가 먼저 농업분야에서 G20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 G20는 농산물 관세 및 농업보조금의 대폭 감축을 통해 선진국 시장으로의 농산물 수출확대도 중요하지만 농산물보다 부가가치가 크며,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공산품과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절한 보호수준 유지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진국이 요구하는 계수 15의 스위스공식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음.
- 특히 브라질과 인도는 최근 들어 제조업 및 IT 분야의 성장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률을 시현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및 IT, 서비스 분야에서의 적절한 수준의 보호가 농산물 수출 확대 못지않게 중요한 국가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3. 세부원칙 도출에 대한 향후 전망

- 2006년 4월 세부원칙 합의·도출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들어 DDA의 신 3강으로 불리는 미국과 EU, 브라질의 삼각쟁점에 대한 타협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사실 지금이라도 주요국들이 세부원칙을 도출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농업부문의 쟁점은 미국과 EU의 중간점에서, 그리고 비농업부문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점에서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말 세부원칙 도출에 실패한 주요 이유는 4월 말보다는 7월 말을 세부원칙 도출의 진정한 시한으로 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서로가 상대방을 압박하는 협상전략을 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주요국들은 7월 말까지만 DDA 세부원칙이 도출된다면, 미국의 무역촉진법(TPA) 시한을 고려하여 2006년 말 DDA를 종결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면, 국가별 이행계획서 제출은 약 3개월 정도면 가능하고(실질적으로 농업보조와 관세를 감축하게 되는 주요 20~25개국 정도만 CS를 제출하는 의미가 있음), 최소한의 CS 검증을 거쳐(약 2개월) 12월 중순에 DDA 종료료를 선언하는 것이 가능함.
- 이후 필요시 2007년에 추가검증(약 3개월)하면 2007년 3월 말이나 4월 초 DDA가 완벽하게 종결되어 미국의 TPA 시한(2007년 6월 30일)에도 일치할 수 있게 됨(과거 UR도 1993년 12월 중순 UR 종결을 선언한 후 1994년 1~2월 동안 CS 검증을 거쳤음).

- 따라서 2006년 7월 세부원칙 합의·도출 여부도 미국과 EU, 브라질이 삼각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타협의지를 가지고 협상에 임할 것이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됨.
- 5월 초부터 6주간의 연속협상이 끝나는 6월 중순 이후 7월 초까지의 기간 중 팔코너 농업 협상그룹 의장이나 라미(Lamy) 사무총장의 책임 아래 협상결과를 반영한 세부원칙 초안이 문서화되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를 가지고 7월 말 세부원칙 도출을 위한 마지막 타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맞추어 미국은 5월 17~19일 주요 12개국(G12) 실무 고위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호주도 5월 23일 주간의 OECD 연례회의에 참석하는 통상장관을 중심으로 소규모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만일 미국이 무역촉진법 시한을 고려하여 7월 말 세부원칙 도출에 적극 나서고(일부 쟁점에 대해 양보하며), G20와 EU도 중간점에서 서로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는다면 7월 말 세부원칙 도출 가능성은 매우 높아짐.
- 따라서 DDA 농업협상은 2006년 6월 중순 이후 약 한 달간이 세부원칙 도출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6주간의 연속협상에도 불구하고 주요국간 삼각쟁점에 대한 타협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는 개도국들이 주장하는 특별품목(Special Products)에 대한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7월 말 세부원칙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DDA는 위기를 맞아 상당 기간 표류하게 될 것으로 봄.
- 세부원칙이 성공적으로 도출되기 위해서는 삼각쟁점(특히 민감품목의 수와 대우)에 대한 주요국간의 이해 절충이 필수적이지만, 개도국 특히 G33⁴⁾이 주장해온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조치(Special Safeguard Measures: SSM)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적절한 타협도 필수요소임.
- 또한 2006년에는 10월 브라질의 대선과 총선,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2007년에는 프랑스의 대선과 총선 등 주요국의 정치일정이 예정되어 있어 7월 말까지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되지 않는다면 DDA는 상당 기간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임.
- 따라서 주요국들이 2006년 7월 말을 얼마나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느껴 서로가 양보하며 타협하느냐가 세부원칙 도출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4) G33은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지역개발을 목적으로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세이프가드를 협상의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개도국그룹으로서 '특별품목그룹'으로 불림. 인도네시아, 인도, 케냐, 중국 등을 포함하여 현재 약 46개 국가가 회원이며, 우리나라도 G33의 일원임.

- 한편 7월 말 세부원칙이 합의·도출된다면 농업부문에서의 대체적인 모습은 미국과 EU의 중간점인 G20안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EU 입장을 반영한 모습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이 감축대상보조에서 일부 양보해 추가감축하는 대신(EU와 G20 요구 일부 수용)블루 박스의 품목별 추가규제를 최소한으로 함(EU와 G20가 일부 양보).
- EU도 관세감축률을 조금 높이면서(미국과 G20 요구의 일부 수용) 민감품목에서 일부 이익을 얻어(미국과 G20가 일부 양보) 균형을 이룸.
- G20도 미국과 EU가 농업보조금과 농산물 관세감축을 소폭 확대한 데 대해(G20의 요구 일부 수용) 공산품의 관세감축에서(그들이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스위스공식의 계수를 소폭 인하함(미국과 EU의 요구 일부 수용).

표 4. 세부원칙 타협 전망

| 분야 | 핵심 쟁점 | 공세적 입장 | | 수세적 입장 | | 타협점(전망) | |
|-----|-------|-----------------|--------------|-----------------------------------|---------------|------------------------------|------------------------------------|
| | | 국가 | 입장 | 국가 | 입장 | | |
| 농업 | 국내 보조 | AMS 감축률 | EU, G20 | 70% 이상 | 미국 | 60% | 70% |
| | | AMS 기준연도 | EU, G20 | 1995~2000년 | 미국 | 1999~2001년 | 1995~2000년 (일부 예외) |
| | | New blue box 규제 | EU, G20 | 품목별 규제 | 미국 | 총량규제 | 품목 규제 추가 (일부 예외) |
| | 시장 접근 | 관세 감축률 | 미국, G20 | 90%, 75% | EU | 60% | 70% |
| | | 민감품목의 수 | 미국, G20 | 1% | EU | 8% | 3~4% |
| | | 민감품목의 대우 | 미국, G20 | 일반 관세율의 50~70% 국내소비량 기준 TRQ 증량 | EU | 일반 관세율의 50% 수입량 기준 TRQ 증량 | 일반 관세율의 50% 가중평균 (국내소비량+수입량) 증량 |
| 비농업 | 관세 감축 | 개도국 관세감축률 | 선진국 (미국, EU) | 계수 15 스위스공식 | 개도국 (브라질, 인도) | 계수 30 | 계수 25 스위스공식 |

- 우리나라의 이해가 가장 크게 걸려 있는 시장접근분야에서는 우리의 농업실정에 맞는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우리나라의 농업 생산은 소수 주요 농산물에 집중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DA 농업 협상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반 관세감축률을 낮추기보다는 민감품목 수에 협상력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함.